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문물연구원의 학술지인 『문물』의 투고, 심사,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문물』의 투고, 심사 및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제3조(발간 횟수)

『문물』는 매년 6월 30일 총 1회 발간한다.

제4조(게재 논문의 내용과 종류)

- 1) 고고학, 미술사, 박물관학, 한국사 및 이에 관련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 2) 게재 논문의 종류에는 1)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 및 연구동향 소개, 관련분야 번역문 등이 포함된다.
- 3) 기타 한국문물연구원의 학술활동에 부합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다.

제5조(논문 투고)

- 1) 투고 자격은 고고학, 미술사, 박물관학, 한국사 및 이에 관련된 전문 연구자를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문물』논문투고 신청서[별첨자료 1] 및 논문을 작성하여 4월 30 일까지 한국문물연구원 『문물』편집위원회로 보낸다.
- 3) 『문물』의 간행 2개월 이전에 투고된 원고에 한하여 심사를 시행하고, 간행일 1개월 이전까지 심사가 완료된 원고만 해당 학술지에 게재한다.
- 4) 공동 필자일 경우, 제1필자와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

제6조(논문 투고 세부사항)

- 1) 원고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파일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e-mail 또는 우편물로 제출)
- 2)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로 첨부하는 서식을 참조한다.
- 3) 매호 간행 2개월 전에 도착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절차(편집규정 참조)를 거친 뒤 게재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4) 계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간행된 『문물』3부와 별쇄 20부를 필자에게 증정한다.

5) 그 외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57-13번지 청운빌딩 한국문화연구원

『문물』편집위원회

Tel: 051-206-4201~2 Fax: 051-206-4209

Homepage: www.kaari.or.kr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1) 『문물』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2차 심사는 별도로 위촉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제8조(논문 심사)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사결과 통보)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계재의 미否를 통보한다.

2)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계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 간행되는 『문물』 제1호부터 적용한다.

[별첨 자료1]

『문물』 논문투고 신청서

투고자	한글	영문	
소속			직위
전공			최종학력
연락처	h·p: 유선:		
주소			
논문제목			
투고일		『문물』 제재호수	
논문형태	연구논문(), 자료소개(), 번역문()		
기타사항	1. 한국문물연구원 학술연구비 수혜자 () 2. 그 외		
<p>1. 본인은 한국문물연구원의 연구 학술지 『문물』에 논문을 투고합니다. 2. 『문물』의 연구윤리규정 및 그 외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p> <p>20 년 월 일</p> <p>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p> <p>『문물』편집위원회 귀하</p>			

* 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문물』논문투고 신청서 및 논문을 4월 30일까지 한국문물연구원 『문물』편집 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